

행정 명령

새로운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을 주 기관 활동에 포함시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살고, 놀고, 나이드는 환경 및 일상적 삶의 환경을 만드는 폭넓은 힘과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요인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웰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환경, 농업, 주택, 교통, 에너지, 공원, 레크리에이션,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공공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원칙적으로 똑똑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은 건강 결과 및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므로,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계획은 공공 정책 관련 모든 정부 기관이 내리는 결정이 미치는 건강 결과를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인구 건강 및 건강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피하며 건강 고려사항을 비건강 기관이 주도하는 정책,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시키므로,

모든 주 정부 기관이 주지사에게 뉴욕주 거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해당 거주민들의 건강, 안전, 웰빙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정책을 만들 때 조언하고 돕는 것은 뉴욕주 정책이므로,

주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의 활동을 통해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가 뉴욕주를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 지정했으므로, 해당 지정은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정한 여덟 가지 거주 적합성 영역(Eight Domains of Livability)을 기반으로 다음을 따릅니다. 1) 옥외 공간 및 건물, 2) 교통, 3) 주택, 4) 사회 참여, 5) 존경과 사회적 포용, 6) 시민 참여 및 고용, 7) 통신 및 정보, 8) 지역사회 및 건강 서비스.

뉴욕이 국내 최초로 고령 친화적 주로 지정됨으로써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계획 및 환경, 경제, 사회적 요인 관련 주 정책 및 절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 고려사항에 관심을 높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령층의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인종, 민족, 장애여부, 낮은 사회경제 계층, 불평등을 경험하는 인구 사이에서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뉴욕주 건강 개선 계획이 주가 다양한 공공 건강 및 예방 조치를 통해 상당한 진보를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뉴욕주 헌법 IV조 1항(Article IV, Section 1)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여기서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 이사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 법인, 공공 기관, 이사회, 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2. 모든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2017년 주지사 시정 방침에 공표된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경우 뉴욕주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우선순위와 세계 보건기구(WHO) 여덟 가지 거주 적합성 영역(Eight Domains of Livability)을 주 계획, 연방 정부에 제출된 계획, 기관 지침, 정책, 절차, 조달체계에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및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의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3. 모든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계약 제안서, 보조금, 연방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할 계획, 적용 가능한 법 및 행정 기준에 맞는 주 계획(State Plans) 개발을 준비하여 실현 가능한 경우 뉴욕주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의 우선사항과 세계 보건기구(WHO) 여덟 가지 거주 적합성 영역(Eight Domains of Livability)을 포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y)은 가격이 결정적 요인이 아닌 적절한 최고의 조달체계를 위해 설정된 평가 기준에 기반하여 주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우선사항 및 세계 보건기구(WHO) 여덟 가지 거주 적합성 영역(Eight Domains of Livability)을 다루는 제안서에 맞게 추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조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4. 앞서 말한 내용을 달성하려면,

A.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y)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현 가능한 경우 가격이 결정적 요인이 아닌 최고의 조달체계 및 보조금을 위한 제안서에 계약자의 제안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및 안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조항,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안정성 같은 합의 및/또는 조달, 한 지역 이상에서 상호보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 이동성, 투자를 활용할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B. 각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y)은 실현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정책 개발, 지침, 규정, 법률안에 포함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i. 모든 주 기관 및 공공 및 민간 협력 기관의 뉴욕주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고령 친화 관련 프로그램, 정책 지지성 및 조직성을 개선할 기회,
- ii. 개인의 능력 및 가치와 상통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iii. 시민 참여 계획 및 참여 확대 방법,
- iv.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강화,
- v. 모든 뉴욕 주민이 튼튼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안녕, 장수, 질 좋은 삶을 즐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접근 방법,
- vi. 기술, 혁신, 조사, 의료 서비스, 비즈니스 등 각 지역의 특수한 장점 및 이러한 장점을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과 가족 부양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법,
- vii. 지역사회 설계, 계획, 구역 설정,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에 건강하고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포함,
- viii. 부양자 지원 촉진,
- ix. 뉴욕 거주민, 특히 고령층, 장애인층, 부양자용 고품질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조항,
- x. 건강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 C. 본 명령일자 30일 이내에 각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y)은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야 한다.
 - i. 해당 코디네이터는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와 관계가 있어야 하며
 - ii.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y)이 본 명령에 따르도록 책임져야 한다.
- D. 뉴욕주 내 기타 모든 정부 기관은 계약, 합의, 조달체계에 대해 유사하게 고려할 것이 장려된다.

2018년 11월 14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1>

주지사

주지사 비서